<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법정관리의 실익과 폐해"

한보그룹이 은행돈 5억7000억원을 도둑질해 온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데없이 대한유화의 보유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나서더니 이제는 삼미그룹이 쓰러지자 법정관리 후 제3자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들을 또다시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법정관리는 건실하게 성장·발전하던 기업이 경기침체 및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로 인해 부도를 내고 쓰러졌을때 그 기업을 보호하고 충격이 산업계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를 동결하면서 부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최하수준으로 인하해 기업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작금에 와 법정관리가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보다는 부실기업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본래목적이 전도된 듯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부도기업이 건실하든 그렇지 않든 「덩치」에 따라 「법정관리」 여부가 판가름나고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 제2금융권의 무책임한 부실대출을 보호해주는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보그룹이 쓰러졌을 때 정부와 관련은행들이 맨먼저 들고 나온 것이 법정관리 후 제3자 인수였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한보의 실상을 보면, 경영이나 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편법대출과 불법대출 그리고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성이 좋고 철강사업을 운영할만한 재정능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정치권 및 고위관료층을 상대로 한 로비능력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담보한 은행돈을 제집 우물 퍼먹듯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보그룹을 「법정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즉,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 까지 한보철강을 보호해주고 회생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아니다」로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관리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 및 계열기업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말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로 보호해줄 것이 아니라 부도처리 후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제3자가 인수하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처리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법정관리」가 정경유착 또는 부실대출을 보호주는 역할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을 잘못한 금융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거래 당사자가 책임질 문제이지 정부나 국민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 거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큰 문제점은 재벌기업들이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돈을 무작위로 끌어쓰면서 타당성과 별 상관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70~80년대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비전문분야로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갖가지 규제수단이 동원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한국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94년이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수가 616개에서 96년말 767개로 151개(24.5%)가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재벌들의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삼미·한라·진로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이 2.9~3.8%, 한일·뉴코아도 10%에 못미쳤으며, 한보그룹은 11.8%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은행돈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95년말 현재 국내 30대 재벌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도 22.3%로 미국·일본의 제조업 평균치 32~36%에는 물론이고 대만의 53%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제2, 제3의 한보·삼미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 뻔한 지금, 재벌이라고 해 무조건 「법정관리」를 통해 보호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은행들의 부실·불법대출이나 정경유착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아니되고, 또 그러할 여력도 더이상 없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기업」에 한해 적용해야지, 무책임의 피난처 역할에 그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화학저널 1997/4/7>